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외 국 환 거 래 법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를 마칩

1. 의결주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분할·합병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요건 사전검토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업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경미한 제재를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련기관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8. 7. ~ 2020. 9.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2항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2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2항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별표2 중 “경고”을 “경고, 주의, 시정권고”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있는 경우	제13조(외국환업무의 등록)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2항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등록을 신청한 자가 금융회사 등이 아닌 경우 2.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3.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인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란 제7조제4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말한다.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

제15조의2(소액해외송금업무의 등록)

④ 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등록을 신청하기 이전에 제2항의 요건 중 일부에 대해 기획재

을 갖추지 못한 경우	<u>정부장관에게 사전검토 요청을 할 수 있다. 사전검토 요청을 받은</u>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u>기획재정부장관은 금융감독원장</u>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u>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u>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⑥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2. 제출받은 서류에 흠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등록을 신청한 자(등록을 신청한 자의 임원을 포함한다)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등록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를 등록한 자(이

⑧ 삭제

하 "소액해외송금업자"라 한다)
는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같은 호에서 정한 금액의 100의 7
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
서 "최저자기자본"이라 한다)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⑧ 각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최
저자기자본을 충족하지 못한 소액
해외송금업자는 다음 회계연도 말
까지 제2항제1호에 따른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⑨ 삭제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별표 2]

등록·인가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제22조 관련)

1. 일반기준

기획재정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에 따라 100의 50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등록 또는 인가 취소 대상인 경우(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등록 또는 인가 취소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고,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의 위반행위가 착오 또는 과실로 인한 것임이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한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 주의, 시정권고로 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1) 1년에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각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업무정지 기간을 합산하여 총업무정지기간을 계산하되, 동일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총업무정지기간을 기준으로 가중 처분할 수 있다.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100분의 3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외환시장 및 금융기관 이용자에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해당 외국환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4) 위반 사유를 지체 없이 시정한 경우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	
연 락 처	(044) 215 - 4753